

#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4년 12월 20일

나. 회부일자 : 1994년 12월 20일

### 3. 제안이유

- 수수료요율이 12년이상 미조정으로 인하여 원가보상율이 36.2%로서 현실성이 없음
- 관계법령의 개폐 및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조례항목을 폐지, 명칭 변경, 신설 등 현실에 맞게 정비

### 4. 주요골자

- 요율인상

. 대 상 : 8항목 (총30항목)

. 인상율 : 평균 6.8% 인상(도불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 : '94. 11. 21)

※ 물가영향을 고려하여 30항목중 조정이 시급한 8항목 평균6.8%인상

구 분	기준	현행요금	조정요금	현행대조정	
				증감액	비율
화재증명	1통	500원	600원	100원	20.0%
소방시설 완비증명	"	500	600	100	20.0
공유재산 신규대부	2건	500	600	100	20.0
공유재산 계속대부	"	300	350	50	16.6
도축검사 (소, 말)	1두	400	500	100	25.0
도축검사(돼지, 양)	"	80	130	50	62.5
중기저당권설정등록	1건	1,000	1,200	200	20.0
중기저당권변경말소	"	1,000	1,200	200	20.0

○ 폐지 및 명칭변경

- 대 상 : 50항목 (삭제 42항목, 명칭변경 8항목)
- 정비사유 : 관련상위법 개폐 및 행정서비스 수요변동에 따라 조례  
내용 중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

○ 신설항목

- 대 상 : 원자제소요량 증명  
(가소요량 3,500원, 확정소요량 1,200원)
- 신설사유 :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없이 신설  
(대외부역관리규정 제5-3-3조)

## 5. 검토보고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  
이는 현행 충청북도제증명발급 수수료요율을 조정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 
하려는 것과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라 관계법령과 조례 등의 항목을 폐지  
또는 명칭변경, 신설등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

그 주요내용으로는

총 30항목의 제증명발급 사항 중 불가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시급한  
8개 항목인 화재증명, 소방시설 완비증명,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 
신규신청과 계속 신청, 소.말.채지.양의 도축검사, 중기저당권 등록 및  
이전등록과 빈경 또는 말소신청에 대한 요율을 인상하여 개정하려는 것과  
총 50항목의 조례내용 중 관련상위법의 개폐 및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에  
따라 존치필요성이 없는 42항목을 삭제함과 아울러 8항목에 대하여는  
현실과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한 내용이니,

원자재 소요량 증명의 발급사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없어  
신설하려는 내용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부합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요율과 그에따른  
조례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니

행정수요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 
승인하여 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첨 부

· 충청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